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요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054 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 : 인요한 • 권영세 • 권영진

이인선 • 조승환 • 성일종

구자근 • 박준태 • 최수진

우재준 · 김도읍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보 험료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 합계액 1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.

이러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각종 위험을 분담하는 민간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, 노후 의료비 등 국가 가 미처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합계액 한도인 100만원은 2014년 현 행법 개정 당시 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.

이에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료비 부담을 미리 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합계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제1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100만원"을 "2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보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근로	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
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	
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	
같다)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	
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	
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	
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	
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	
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(제	
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)에	
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	
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	
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보	<u>.</u>
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	
<u>100만원</u> 을 초과하는 경우 그	200만원
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	
으로 한다.	·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① (생 략)	② ~ ① (현행과 같음)